

##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특허청장

### 1. 사업 개요

-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가치평가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75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지식재산평가별(가치평가형, 등급형) 내용은 별지서식 제1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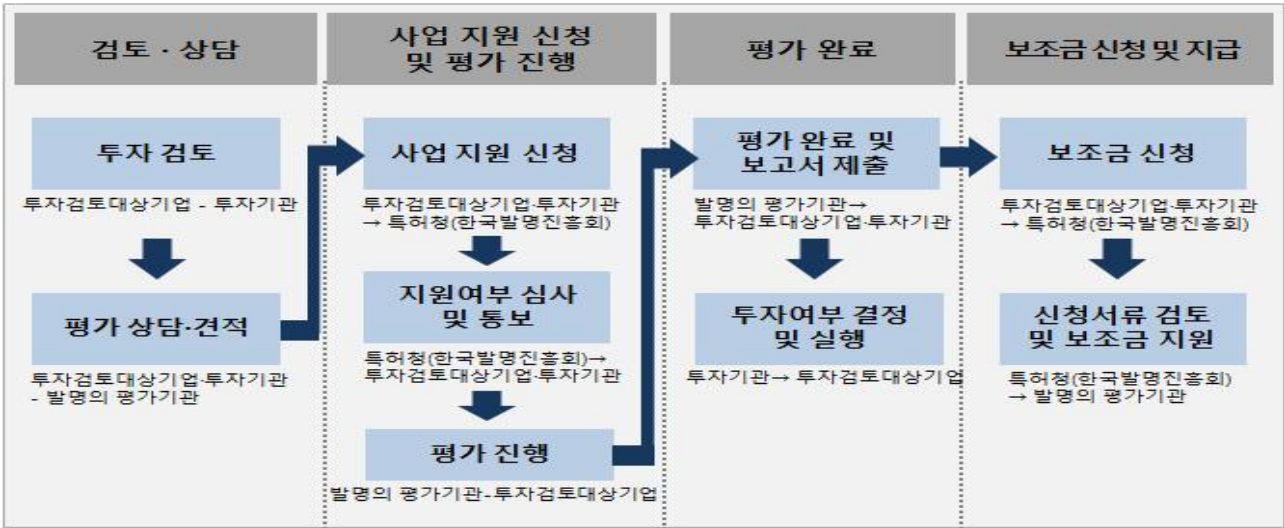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4쪽 참고](#))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기업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필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연도 IP보증, IP담보 평가비용을 이미 수혜받은 기업도 IP투자연계 평가비용 지원 가능 ([☞공고문 17쪽 참고](#))

## 4. 사업 진행절차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투자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

##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ipv\_too@kipa.org 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명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2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최근 2개월 이내
4		기업신용·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5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2-3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아님)	1부	별지서식 제2-4호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중견기업 필수제출)	각 1부	최근 2개월 이내	
7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8		평가보고서 사본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9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10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1호
1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1부	-
12		평가계약서 사본	1부	-

\*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내 첨부 서식 활용

○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li> <li>- '임원에 관한 사항' 상 <b>대표이사의 생년이 1983년 이후 2005년 이내일 것</b>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b>말소사항 포함</b>된 제출용 발급</li> </ul>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b>(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li> <li>-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b>2년 이내일 것</b></li> <li>-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li> </ul>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벤처확인서 사본</b>(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li> <li>- 확인서 <b>유효기간 이내</b>(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li> <li>-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li> </ul>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노비즈확인서 사본</b>(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li> <li>- 확인서 <b>유효기간 이내</b>(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li> <li>-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li> </ul>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b>(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li> <li>- <b>2021년 이후</b>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li> <li>-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li> </ul>
녹색기술 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녹색기술 인증서</b>(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li> <li>- 인증서 <b>유효기간 이내</b>(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li> <li>-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li> </ul>
장애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장애인기업확인서</b>(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li> <li>-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li> </ul>
국가유공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가유공자 확인서</b>(발급기관: 국가보훈처)</li> <li>-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li> <li>-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li> </ul>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성기업확인서</b>(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li> <li>-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li> </ul>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발급기관: 법원)</li> <li>- '회사성립연월일'이 <b>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b></li> <li>-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b>말소사항 포함</b>된 제출용 발급</li> </ul>
우수IP 보유 BIG3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IG3 기업 지원확인서</b></li> <li>-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li> <li>-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li> </ul>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b>(발급기관: 세무서)</li> <li>-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li> </ul>

\* 우대 지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해당하는 사유별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6. 문의처

구분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지식재산 평가문의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42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발명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은 진행하지 않음

[별첨]

1. 지식재산가치평가 유형별 예시 각 1부.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3.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지식재산가치평가 내용(예시)】**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은 투자기관이 대상기업의 특허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기술평가 수행 및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예시1) 가치평가형 평가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평가모형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 가능

**[지식재산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① 기술개요
	② 기술환경분석
	③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분석
권리성	① 권리 안정성
	② 권리범위분석
	③ 사업 연관성
시장성	① 시장개요
	② 시장환경분석
	③ 시장경쟁분석
사업성	① 사업화 기반 역량
	② 제품 경쟁력
	③ 매출 추정 및 수익분석
가치평가	지식재산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NPV)를 결정하고,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

\* (예시2) 등급형 평가 투자기관 맞춤형 특허 평가(권리성/기술성 중심)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등급화 하여 평가 가능

**[지식재산 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항목	평가내용
특허 권리성	① 제품적용여부
	② 구성의 필수성
	③ 선행기술존재여부
	④ 실시예의 다양성
	⑤ 특허의 활용 가능기간
	⑥ 경쟁사의 응용기술 선점여부
	⑦ 발명의 효과와 독립항의 효과의 동일성
	⑧ 해외권리 확보여부
특허 기술성	① 혁신성
	② 상용화 가능성
	③ 호환성
등급평가	각각의 항목에 등급을 책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식재산의 최종 등급산정